

#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956
----------	------

발의연월일 : 2010. 02. / 0  
발 의 자 : 김판동 의원 외  1인

## 1. 주 문

- 안산권역에 추진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 즉 수인선·신안산선·소사-원시선 등이 우리시민의 이동편의 증진, 도시 경제발전 등 유·무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자 시의회차원에서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2010년 2월 2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함.

### 가. 구성목적

안산권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인선은 반지하화로 동서가 양분되지 않고 도시미관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상부를 최대한 활용토록 추진하고, 신안산선은 국토해양부에서 신안산선 노선 결정 시 성포-목감 구간에 추가 정거장 설치 및 경기테크노파크까지 노선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함과 동시에 지역간·시민간 민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소사-원시선은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이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고, 4호선은 도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도록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활동기간 : 2010. 2. 22. ~ 2010. 06. 30.

다. 위원 수 : 9인

## 2. 제안이유

- 현재 안산권역에는 「대도시권광역기본계획」에 의하여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의 철도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안산시를 양분하고 있는 전철4호선도 지중화하자는 활발한 논의가 있는 현실임.
-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은 우리시와 협약을 통하여 안산시 구간은 반지하화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부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 명품도시에 맞게 도시미관도 적극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기에 건설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신안산선은 서울 중심부와 직접 연결되는 수도권의 중요한 노선으로 2009.11.02.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합의안을 통해 여의도-안산 중앙노선과 여의도-송산그린씨티 노선으로 발표한 상태임
- 하지만 잠정합의안의 노선 중 여의도-안산 중앙노선의 경우 당초 우리시에서 요구한 경기테크노파크까지 노선이 연장되지 않았으며, 성포-목감구간은 정거장이 없어 성포동, 월피동, 수암동 등의 주민들의 불편 및 지역갈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또한 아직까지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고시 전까지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소사-원시선은 부천에서 시작되어 안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전철로써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이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전문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
- 또한 안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을 지중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4호선은 상록수역에서 안산역 구간이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여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어 도시의 양분화와 전철운행에 따른 소음, 대기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방법, 추진방향 등에 대한 철저한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3. 참고사항

####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 삭제 <2006.9.28>
-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